

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

(주미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571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. 15.
발의자 : 주미희 의원 외 16명

1. 제정이유

- 질병과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 사용으로 오·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,
-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안전한 보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책무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- 추진사업 규정 (안 제4조)
-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,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- 홍보,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6. 입법예고결과 : 해당사항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21. 1. 7. ~ 1. 12. (5일간)
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4 (관련부서 검토의견서)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의약품 오·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의약품” 이란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2. “의약품 안전사용” 이란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을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험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불용의약품” 이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.
4. “폐의약품” 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·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.
5. “복약안내”란 의약품의 명칭, 용법·용량, 효능·효과, 저장방법,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(이하 “불용의약품 등”으로 한다) 발생을 최소화하고, 약국·보건소·보건지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추진사업)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
2.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
3.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사업
4.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 사업
5.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제5조(불용의약품 등의 관리)**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,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,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수집·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·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재정지원)**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- 제7조(홍보)**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안산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,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- 제8조(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)**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주미희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74)

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8-557
--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월 28일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

□ 수정이유

-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함.

□ 주요골자

- “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 사업” 삭제 (안 제4조제4호)

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4조(추진사업) 시장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4조(추진사업)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원안과 같음)
<u>4.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 사업</u>	<u><삭 제></u>
<u>5. (생 략)</u>	<u>4. (원안 제5호와 같음)</u>